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 기 관 의 장 |
| 람 |         |

## 제 1242 호 2020. 7. 2.(목)

###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39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40호[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41호[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42호[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19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43호[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 24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44호[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45호[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33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46호[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47호[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0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48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49호[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        |  |
|--------|--|
| 안<br>내 |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br>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br>☞ 북구 홈페이지( <a href="http://www.bukgu.ulsan.kr">www.bukgu.ulsan.kr</a> )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   |  |  |  |  |  |  |  |  |
|---|--|--|--|--|--|--|--|--|
| 회 |  |  |  |  |  |  |  |  |
|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5, 행정7125)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59호[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50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60호[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52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61호[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 54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62호[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 56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25호[하천 점용 허가 고시]····· 6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26호[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 고시]····· 6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28호[하천 점용 허가 고시]····· 66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786호[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6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0년 7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39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연가계획 수립 시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가원의 제출”을 “연가 신청”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얻을”을 “받을”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입영 당일 ”을 “자녀의 훈련소 입소·퇴소 당일 각각 ”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구청장은 재난·재해, 각종 행사, 선거업무 등 노고가 인정되거나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 등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

제24조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3일 (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6일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보육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간 3일 (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6일을 말한다)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8.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부여를 위해 연간 3일의 자기계발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직원 복지 증진 및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강화를 위해 보육휴가 및 자기계발휴가 조항 신설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 현행 조례 제6조, 제20조제2항·제5항, 제24조제2항제1호

나. 군 입영 자녀 휴가일수 및 사유 확대(제24조제2항제5호)

- (현행) 자녀 입영 당일 1일 → (개정) 자녀 군(軍) 훈련소 입·퇴소 시 각각 1일

다. 포상휴가 사유 구체적 명시(제24조제2항제6호)

- 재난·재해, 각종 행사, 선거업무 등 구체적 명시

라. 자녀 양육이 필요한 공무원을 위해 보육휴가 신설(제24조제2항제7호)

- 4세 이하 자녀 1명 → 3일
- 4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6일

마.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을 위해 연간 3일의 자기계발 휴가 신설(제24조제2항제8호)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정비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0년 7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40호

##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핑장”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카라반, 오토캠핑사이트, 해상캠핑사이트 및 그 밖의 편익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캠핑장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구청장 또는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법인과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성수기”란 7월부터 8월까지와 12월 31일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6. 평일, 주말·공휴일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평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 주말·공휴일: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일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캠핑장은 구청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 등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관리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 납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캠핑장 예약시스템(이하 “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이용하여 예약 및 결제를 하여야 한다.

② 예약신청은 사용일이 속한 월의 전월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시간, 방법 등은 관리자가 정하여 예약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약한 사람은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전일에 예약한 사람은 신청 즉시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해진 시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다.

⑤ 사용자는 사용 당일 발생하는 별표 1에 따른 추가요금 납부는 신용카드로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2. 100분의 3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자.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3. 100분의 20 감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4. 100분의 10 감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캠핑장 입실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사용자에게 유리한 감면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사용예약자가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반환 기준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제한 사유를 공지하여야 한다.

- 1. 공익상 또는 시설의 개·보수나 점검이 필요한 경우
-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9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 이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 3의 캠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자는 캠핑장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대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1. 별표 3의 캠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2. 그 밖에 공공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 등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2. 실비로 손해배상 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상복구 시에는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원)

| 시 설 명           | 구분        | 정원           | 사용기준  | 성수기     | 비 수 기      |         | 비 고    |                                 |      |
|-----------------|-----------|--------------|-------|---------|------------|---------|--------|---------------------------------|------|
|                 |           |              |       |         | 주말·<br>공휴일 | 평일      |        |                                 |      |
| 카라반<br>(테마형)    | 1대        | 4명           | 1동/1박 | 160,000 | 140,000    | 120,000 | 6동     | - 전가수도<br>사용료 포함<br>- 주차: 1대/1일 |      |
| 오토<br>캠핑<br>사이트 | 일반<br>테크  | 1면<br>(5×7m) | 4명    | 1개소/1박  | 40,000     | 35,000  | 30,000 |                                 | 13개소 |
|                 | 필로티<br>테크 | 1면<br>(9×8m) | 8명    | 1개소/1박  | 60,000     | 50,000  | 40,000 |                                 | 6개소  |

## ※ 성수기·비수기 등 구분

1. 성수기: 7월부터 ~ 8월까지, 12월 31일
2.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3. 평 일: 일요일 ~ 목요일
4. 주말·공휴일: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일

## ※ 시설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시설 사용시간: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2.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 가.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시설사용료의 20%
  - 나.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시설사용료의 40%
  - 다. 4시간 초과: 1일 사용료
3. 필로티테크 사용 시 차량과 텐트 각각 1대(동) 추가 가능
  - 가. 차량 추가요금
    - 성수기, 비수기 주말·공휴일 : 5,000원, 평일 : 2,500원
  - 나. 텐트 추가요금
    - 성수기, 비수기 주말·공휴일 : 30,000원, 평일 : 15,000원

[별표 2]

**캠핑장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7조 관련)**

| 구 분  |             | 반 환 기 준               |             | 비고           |  |
|--|-------------|-----------------------|-------------|--------------|--|
|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 성수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 선납금액 전액 반환   |  |
|  |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 선납금액의 90% 반환 |  |
|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 선납금액의 70% 반환 |  |
|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 선납금액의 50% 반환 |  |
|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 당일 14:00 이전 | 선납금액의 20% 반환 |  |
|  | 또는          |                       |             |              |  |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당일 14:00 이후           | 반환 없음       |              |  |
|  |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 선납금액 전액 반환   |  |
|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 선납금액의 90% 반환 |  |
|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14:00 이전    | 선납금액의 80% 반환 |  |
| 14:00 이후   |             |                       | 반환 없음       |              |  |
| 관리자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 취소 일에 관계없이 선납금액 전액 반환 |             |              |  |

-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 ※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 ※ 사용예정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 [별표 3]

**캠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제10조 관련)****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사용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1. 입실 및 퇴실**

- 출입은 반드시 정문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이며,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이용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사용료 등의 납부**

- 시설사용료는 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의 납부 방법에 따르며 선납합니다.

**3. 장소**

- 사용자는 배정된 장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사(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 캠핑 및 주차는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차량이용**

- 다른 야영객의 휴식을 위해 22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 자동차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 캠핑장 내에서는 서행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음**

- 캠핑장 내에서 폭죽놀이는 금지하며, 21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 다른 야영객 및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고성방가 등 소음발생 행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위생**

- 샤워장과 개수대에서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한 절수 바랍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분리배출 바랍니다.

**7. 나무 보호**

- 나무에는 일체의 시설(로프매듭 포함) 행위를 금지합니다.

**8. 동물**

- 캠핑장 내에는 다중 이용시설로 애완동물은 구역 내 출입을 일체 금지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실 조치합니다.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9. 화재와 사고**

- 캠핑장내 수목 등의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 외 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변의 나무 등 부산물을 수집하는 행위는 금합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와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0. 홍보 및 판매**

- 캠핑장 내에서 정치적·종교적·상업적인 홍보와 물품 판매 등은 할 수 없습니다.

**11.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 등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12. 긴급사태**

- 호우강풍 등 자연재해 및 그 밖의 긴급사태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 지역 관광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여가 및 휴양문화 공간으로 캠핑장이 조성됨에 따라, 캠핑장의 쾌적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 제2조)

나. 관리 및 운영(제3조)

다. 시설사용료 세부기준(제4조, 별표 1)

- 1) 캠핑장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 : 성수기, 비수기 등 구분
- 2)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

라. 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 납부(제5조)

마. 시설사용료의 감면(제6조)

- 1) 전액 감면: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2) 100분의 30 감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 3) 100분의 20 감면: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4) 100분의 10 감면: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바. 시설사용료의 반환 및 시설의 사용제한(제7조 ~ 제8조, 별표 2)

사.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제9조)

아.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책임(제10조 ~ 제11조, 별표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동 권 (인)

2020년 7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41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영유아플라자”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공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보육전문요원”을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수탁기관에 대하여”를 “수탁기관에 대한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로, “두”를 “한”으로 한다.

제16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1(운영위원회)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1.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보육 전문가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보육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면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면제

-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면제
-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0/100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50/100
- 6.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다자녀 가정: 50/100
-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100

제4장을 삭제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이하 이 장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법 제12조에 따른다.

제22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행규칙 제2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장을 삭제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과 용어 일치 및 개정사항 반영
-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운영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용어 정의대로 정비(제2조제6호, 제6조제2호, 제5장, 제20조, 제22조제1항)
-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위탁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 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신설(제16조의1)
- 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기준 변경(제18조제3항)
- 마. 영유아플라자의 운영 조항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중복되어 삭제(제4장, 제19조)
- 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제20조제1항)
- 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규정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제6장, 제26조, 제27조, 제28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0년 7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42호

###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과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돌봄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2. 돌봄 아동의 연령
3. 다자녀 가정
4. 다문화 가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실시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운영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6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돌봄 협의회)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협의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2.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 조사
3.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증진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 초등학생 등에게 적절한 돌봄 지원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운영 매뉴얼(2019. 6. 14.)」에 따라 돌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 다. 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제4조)
- 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및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제5조 ~ 제6조)
- 마. 돌봄 협의회에 관한 사항(제7조 ~ 제8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0년 7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43호

###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노동력 유지가 어려운 취약노동자의 건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영세소규모사업장노동자”란 상시노동자 5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나.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및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라. “영세자영업자”란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고 임금노동자도 고용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마. “이주노동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바. “실직상태인 자”란 취업을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이 조례에 의한 건강지원 활동을 통해 노동자를 보다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건강진단”이란 법적 건강진단 및 현지 상담 의료진의 간이 검진 형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 체크를 말한다.

4. “사후관리”란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 뇌심혈관질환 발병 우려가 큰 사람 등에 대해 자가건강관리를 지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약노동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며, 건강한 노동력 유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및 지도·상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 및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약노동자의 건강진단 및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2. 취약노동자 건강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3. 취약노동자 건강 관련 연계사업
4. 그 밖에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및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사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 수행 방법) ① 구청장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건강증진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홍보
3.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과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4.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 관리
5. 그 밖에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3. 공공 혹은 민간보건의료기관에서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예방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 등 관련 전문의
5. 노동복지 및 노동자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산업 안전보건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산업구조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키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제4조)

- 1) 취약노동자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 2)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연계사업
- 3) 울산광역시 및 관련기관 협조 요청, 노사 관련 단체 의견청취

라. 사업 수행 방법(제5조)

마. 건강증진위원회(제6조)

- 1)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바. 재정지원 등(제7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0년 7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44호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경관 자문 대상 시설물”을 “경관 자문대상 건축물”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경관협의 대상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경관 협의대상  
건축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경관 자문대상 건축물(제19조제3항제2호 관련)

| 분류        | 시설물 종류   |
|-----------|--|
| 공공<br>건축물 | 가.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주하는 건축물<br>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br>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br>라. 문화 및 집회시설<br>마. 노유자시설<br>바. 업무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br>※ 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 포함<br>※ 다만, 타 위원회에서 경관분야 심의를 받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별표 3]

경관 협의대상 건축물(제19조제5항 관련)

| 분류   | 시설물 종류  |
|------|---|
| 산업로  | 가. 폭 15m 이상 도로변(단, 산업로의 경우 도로변 완충녹지도 도로로 간주) 3층 이하 또는 연면적 1,000㎡ 미만의 신축 건축물<br>나. 그 외 기타지역은 5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
| 호계로  | 3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
| 강동해안 | 2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
| 매곡천  | 2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에 따라 구성될 공공 디자인진흥위원회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화 도모
-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문대상 공공건축물 시설물의 종류에 대한 확대 및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도시시설물과 공공시설물 등 중복되는 조항 삭제(제19조)
- 나. 공공건축물 시설물의 종류 확대 및 수정(제19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0년 7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45호

###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및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정비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정비대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빈집의 활용방법) ① 구청장은 빈집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실
  3.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지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4.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② 제1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빈집정비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4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사고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빈집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홍보) 구청장은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빈집 활용이 적극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비용이 제8조에 따른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8조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한 경우 지급한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제3조 ~ 제4조)
- 다.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5조)
- 라. 정비대상, 빈집의 활용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제6조 ~ 제8조)
- 마. 홍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제9조 ~ 제10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0년 7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46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조항 삭제(제22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0년 7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47호

###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지원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환자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대한 홍보·교육
5.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6.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만 60세 이상의 구민
2. 치매환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에 따른 비용
2. 치매환자의 의료지원에 따른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교육 및 홍보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8조(지역사회협의체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지역사회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사회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지역사회협약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가. 치매 관련 전문가

나. 치매관리사업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다. 치매환자 가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협약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사회협약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사회협약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협약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협약의체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울산  
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약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 제2조)
- 나.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4조)
- 다. 치매관리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제5조)
- 라. 치매관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제6조)
- 마.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제7조)
- 바. 지역사회협의체에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제8조 ~ 제9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0년 7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48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의원은”을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으로, “미리”를 “그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 등을”을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자문하여야 한다.”를 “자문할 수 있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제도를 통일성 있게 운영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시기 등 기준 완화(제13조제2항, 제3항)

- 1) 신고대상 : 모든 강의 → 사례금을 받는 강의
- 2) 신고시기 : 사전 신고 → 10일 이내 사후 신고
- 3)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신고내용 보완기한 : 2일 이내 → 5일 이내

나. 제한대상을 의원으로 구체적 명시(제13조제5항)

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제18조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0년 7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49호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7호 본문 중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을 “다자녀가정(「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의 다자녀가정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제16조제5항 본문 중 “18퍼센트”를 “6퍼센트”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신부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 조문과 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금 연체이자 조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조문 정비(제6조 제4항제7호)
- 나.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신부 주차요금 감면조항 신설  
(제6조제4항제12호)
- 다. 융자금 연체이자 조정에 따른 조문 정비(제16조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0년 7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59호

###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과
3. 구비보조단체·기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전 동 명칭이 동 행정복지센터로 통일됨('18. 7. 26.)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을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18. 12. 6.)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19. 9. 1.)에 따라, 우리 구 자체감사 적용범위의 감사대상기관에 '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 추가

### 2. 주요내용

- 자체 감사대상기관에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추가 및 '동주민센터' 삭제(제2조제1호부터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0년 7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60호

###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그”를 “그 공무원의”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공직자등이 모든 외부강의 등을 사전 신고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외부강의 신고대상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고로 변경(제15조제2항)
- 나. 외부강의등의 사전신고·사후보완 규정 삭제(제15조제3항 ~ 제15조제4항)
- 다. 외부강의등 제한대상을 공무원으로 구체적 명시(제15조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0년 7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제9조(환수) 조항은 상위법에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규정은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환수절차에 따르도록 정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포상금 환수 규정 정비(제9조)
  -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0년 7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62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법 위반자”로, “범한”을 “하여 적발된”  
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감경기준) ①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② 감경기준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제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로,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제3조 관련)

1. 공통기준

- 가.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 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 나.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최초 처분을 받게 된 경우 50퍼센트 감경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과징금 금액                              | 위반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    |                             |                              |
|---|-------------------------------------|--------------------|-----------------------------|------------------------------|
|   |                                     | 50퍼센트              | 30퍼센트                       | 20퍼센트                        |
|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 5만원 미만    |
|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    | ·매체물 수량이 10개 이상 ~ 30개 미만    | ·매체물 수량이 30개 이상 ~ 50개 미만     |
|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 ·주류·담배 판매액이 1만원 미만 | ·주류·담배 판매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 ·주류·담배 판매액이 3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
|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 ·판매액이 1만원 미만       | ·판매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 ·판매액이 3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

| 위반행위   | 과징금 금액                 |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                  |                             |                              |
|--|------------------------|--------------------------------|-----------------------------|------------------------------|
|  |                        | 50퍼센트                          | 30퍼센트                       | 20퍼센트                        |
|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br>1,000만원 | ·기소유예,<br>선고유예<br>처분을 받은<br>경우 | -                           | -                            |
|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 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br>500만원   | ·기소유예,<br>선고유예<br>처분을 받은<br>경우 | -                           | -                            |
|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출입허용 횟수마다<br>300만원    | ·출입 인원이<br>3인 미만               | ·출입 인원이<br>3인 이상 ~<br>7인 미만 | ·출입 인원이<br>7인 이상 ~<br>10인 미만 |
|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기소유예,<br>선고유예<br>처분을 받은<br>경우 | -                           | -                            |
|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기소유예,<br>선고유예<br>처분을 받은<br>경우 | -                           | -                            |
|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br>1,000만원    | ·기소유예,<br>선고유예<br>처분을 받은<br>경우 | -                           | -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현행 규칙에서 과징금 감경기준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감경 규정에 따라 과징금 감경기준을 정비하고, 일부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과징금의 감경기준에 따라 정비(제3조, [별표] )
  - 위반행위의 양태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기준 정비
  - [별표] 전부 변경
- 나. 상위법 제명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 제2조제2호, 제4조제3호,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 다.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일부규정 개선·보완
  - 제4조제2호, 제4조제3호, 제6조제1항
- 라. 제5조(감경범위 및 기준) 전부 삭제
- 마.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일부 변경

##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염포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농수산과)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3. 점용 목적 및 개요**

인공구조물 설치(심청골못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양정동 산 91, 771-1번지

나. 면적 : 989㎡

**5.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착공일로부터 ~ 영구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완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고시내역

| 실시계획<br>신고번호<br>(년월일)     | 피허가자                    |             | 점용장소                    | 면적<br>(㎡) | 공사완료<br>신고<br>수리일자 | 공사내용        |
|---------------------------|-------------------------|-------------|-------------------------|-----------|--------------------|-------------|
|                           | 주소                      | 성명          |                         |           |                    |             |
| 제2020-2호<br>(2020.06.05.) | 경기도 성남시<br>분당구<br>불정로90 | 주식회사<br>케이티 | 복구<br>당사동250-2번지<br>일원  | 0.06      | 2020.06.26.        | 전주신설        |
| 제2020-4호<br>(2020.06.12.) | 울산광역시<br>복구<br>산업로 1010 | 복구청장        | 복구<br>산하동367-16번지<br>일원 | 6         | 2020.06.26.        | 홍보조형물<br>설치 |

##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신 명 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박삼\* 외 1인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2길 28-14

**3. 점용 목적 및 개요**

토지의 점용(진출입로, 쇄석포장)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신명동 196-3번지, 282-24번지

나. 면적 : 30m<sup>2</sup>

**5.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2020. 06. 30. ~ 2024. 12. 31.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             |  |                     |                    |
|---------------------|-------------|--|---------------------|--------------------|
| 시행자<br>(점용·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                     |                    |
|                     | 대표자<br>(성명) | 박 봉 *  | 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안로 1465 |
| 소하천명                |             | 주 령 천  |                     |                    |
| 공사<br>(점용·사용)<br>개요 | 위치          | 무룡동 162번지 외 13필지   |                     |                    |
|                     | 면적          | 1,488㎡   | 폐천부지(廢川敷地)<br>예상 면적 | ㎡                  |
|                     | 기간          | 당초 : 2015. 03. 24. ~ 2019. 06. 30.<br>변경 : 2015. 03. 24. ~ 2019. 06. 30. |                     |                    |
|                     | 목적 및 사유     | 우량농지를 위한 성토  |                     |                    |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